



뉴저지 주 사법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변호사 윤리청

변호사 윤리청(Office of Attorney Ethics)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njcourts.gov 로 가서 "변호사 윤리(attorney ethics)"를 검색하십시오.

수임료 중재 프로그램

수임료 중재 프로그램(Fee Arbitration Program)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청구받은 법률 수임료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정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위원으로 구성된 17 개의 위원회가 주 전역에서 운영됩니다. 자원봉사 위원은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이 이들을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비공개 심리를 통해 청구된 수임료가 합당한 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공정하고 저렴하며 법정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수임료 중재

수임료 분쟁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변호사 징계 사안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의 대안으로, 뉴저지 주 대법원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변호사 수임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7 개의 구역별 수임료 중재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법원 규정에 따라, 수임료 중재를 요청하려면, 먼저 해당 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한 구역 위원회의 서기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수임료 산정 방식과 청구 방식에 관해 서면 설명을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사건 진행 방식과 소요 비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시 수임료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수임료 중재 위원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자의 뒷면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중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역 수임료 서기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임료 중재 요청(*Fee Arbitration Request*) 양식은 30 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임료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청구서가 부당한 것 같으면,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변호사와 청구서에 대해 논의해 보십시오. 세부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 금액이 높을 수 있는 일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이 예상보다 더 복잡했을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초 견적이 실제 청구액보다 적게 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면, 청구서 조정에 동의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계획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임료 중재 신청 방법

해당 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한 카운티의 구역 서기에게 수임료 중재 요청(*Fee Arbitration Request*) 양식을 보내십시오. 양식 사본 5 부와 기타 관련 서류 사본을 포함하십시오.

제출 시 \$50 의 접수 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50 의 접수 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수임료 중재 요청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표나 머니 오더는 **반드시** "Disciplinary Oversight Committee(징계 감독 위원회)" 앞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50 의 접수 수수료 지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수료 면제 요청(*Fee Waiver Request*) 양식을 제출하여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의 사본은 수임료 중재 요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요청(*Fee Waiver Request*) 양식을 요청하려면, 변호사 윤리청(Office of Attorney Ethics)의 수임료 중재부(Fee Arbitration Unit)로 연락하십시오(전화: 609-403-7800, 내선 34120).

구역 수임료 서기가 사건을 검토할 것입니다.

관할권에는 재량적 제한과 의무적 제한이 있으므로, 구역 서기가 수임료 중재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수임료 중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How to Dispute an Attorney's Fee - Korean

- 수임료가 \$100,000 이상일 경우.
- 의뢰인이 변호사의 통지를 받은 지 30 일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마지막으로 변호사 서비스가 제공된 지 6 년 이상이 지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수임료 중재 신청을 위한 적절한 30 일 사전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임료가 법원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경우.
- 수임료 분쟁이 중대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이 이러한 중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변호사 답변

변호사는 수임료 중재 요청서 사본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답변 요청(Attorney Response Request)* 양식을 작성하여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심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심리 전 합의

수임료 분쟁은 심리 없이 합의 가능합니다. 심리 전에 분쟁이 합의되면, 당사자들은 구역 수임료 서기에게 합의 조건서(Stipulation of Settlement)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 중재 심리

사건을 검토하여 수락한 후, 서기가 심리 일정을 잡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최소 10 일 전에 심리 날짜를 통지받아야 합니다.

- 분쟁 금액이 \$3,000 미만인 경우, 구역 수임료 중재 위원회의 위원 1 명 앞에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분쟁 금액이 \$3,000 이상인 경우, 구역 수임료 중재 위원회의 3 명의 위원단 앞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단은 보통 1 명의 일반 시민과 2 명의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수임료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녹음되지 않습니다. 수임료 분쟁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통역사 또는 ADA (미국 장애인법)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609-403-7800 내선 34120 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요청을 해 주셔야 저희가 해당 요청이나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How to Dispute an Attorney's Fee - Korean

심리에서 수임 계약의 성격과 수임료의 합리성을 입증할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중재

구속력 있는 중재(Binding Arbitration) 양식에 서명하여 수임료 중재를 진행하기로 선택하면, 의뢰인은 30 일 이내에 이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뢰인은 수임료 중재 위원회의 관할에 구속됩니다. 변호사 또한 이 절차에 구속됩니다. 일단 수임료 중재를 요청하면, 양측은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구속됩니다.

수임료 중재 심리 결정

수임료 중재 위원회는 법률적 과실에 대한 금전적 손해보상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수임료가 합리적인지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려 요소는 변호사의 행동 규범(Rule of Professional Conduct) 1.5(a)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리 위원단이 의뢰인이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 심리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의뢰인이나 변호사 중 어느 한쪽이 항소를 한 경우입니다.

30 일 이내에 변호사가 해당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 윤리청의 수임료 중재부에 609-403-7800, 내선 34120 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료 결정을 준수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변호사 윤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 중재 항소

수임료 중재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수임료 중재 위원회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불공정이 있었을 경우.
- 수임료 중재 위원회가 실제 사기를 저지른 경우.
- 수임료 중재 위원회가 법률과 법원 규칙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경우.
- 해당 사건을 결정한 수임료 중재 위원회 위원 중 누구든 해당 사건과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항소는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서면 결정일로부터 21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는 징계 심사 위원회(Disciplinary Review Board)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를 하려면, *수임료 중재 항소 통보(Fee Arbitration Notice of Appeal)*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Disciplinary Review Board
Richard J. Hughes Justice Complex
P.O. Box 962
Trenton, NJ 08625

수임료 중재 절차는 비밀로 진행됩니다.

수임료 분쟁에 대해 누구와도 논의하지 마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임료 중재 과정에서 위원들과 논의하는 경우; 또는
2. 해당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우.

의뢰인 보호를 위한 변호사 기금

가끔 변호사에 대한 불만 사항이 부정직한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귀하의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사건을 해당 카운티 검찰청과 구역 윤리 위원회에 통보한 후, 의뢰인 보호 변호사 기금(Lawyers' Fund for Client Protection, 이하 "기금")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주 대법원의 별도 위원회로서 고유한 목적, 관할권 및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윤리 위원회와 수임료 중재 위원회가 청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처럼, 해당 기금도 변호사를 징계하거나 수임료 분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금은 변호사의 과실이나 업무상 과오에 근거한 청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인과 변호사-의뢰인 또는 신탁 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 변호사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 않은 한, 정직되거나 변호사 자격 박탈 상태여야만 기금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 기금은 6 명의 관리 이사(5 명의 변호사와 1 명의 일반 시민)가 관리하며, 모두 자발적으로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법률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변호사들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뉴저지 주 변호사들이 매년 납부하는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How to Dispute an Attorney's Fee - Korean

문의 사항이 있거나 청구 양식을 원하시면, 기금 웹사이트

<https://www.njcourts.gov/attorneys/cpf.html> 를 방문하거나, 855-533-3863 로 전화하거나,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New Jersey's Lawyers' Fund for Client Protection

P.O. Box 961

Trenton, NJ 08625-0961

귀하의 변호사가 비윤리적 행위에 관여되었다고 믿는다면,

<https://njcourts.gov/attorneys/oae.html> 을 방문하거나 1-800-406-8594 로 핫라인에 연락하여

윤리 및 수임료 중재 양식을 받으십시오.

스튜어트 래브너

수석판사

Stuart Rabner

Chief Justice

조안나 바르바 존스

변호사 윤리청장

Johanna Barba Jones

Director, Office of Attorney Ethics